

『자동스윙이체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자동스윙이체 서비스 신청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하나원큐 앱"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에서 실행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서 은행이 뱅킹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자동스윙이체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매 영업일마다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 계좌의 잔액 중 일정 금액을 서비스에 연결된 타 금융기관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스윙이체"와 일정 금액을 연결된 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연결된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요청하는 "역스윙이체" 서비스를 말합니다.
- "스윙이체"란 매 영업일 오전 4시 이후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계좌의 잔액 중 일정 금액을 서비스에 연결된 타 금융기관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 연결이 가능한 계좌는 은행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역(逆)스윙이체"란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은행의 대출원리금 또는 하나카드사의 결제대금 자동납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결제대금 부족 시 매 영업일 오후 4시 이후 서비스에 연결된 타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연결된 은행계좌로 부족한 자금만큼 자동이체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때, 자동이체를 요청한 금액보다 연결된 타 금융기관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남은 잔액에 대해 자동이체를 요청합니다.
- "연결계좌"란 이 서비스에 가입할 때 지정한 은행계좌 또는 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가입대상

- 서비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고객으로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 및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하면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가입

- ① 이 서비스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결이 가능한 은행계좌와 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각각 보유하여야 하며, 연결 가능한 계좌는 은행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비스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1. 연결하고자 하는 계좌가 지급정지 등 지급 관련 제한이 있는 계좌인 경우
 2. 연결하고자 하는 계좌가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또는 금융사기계좌 등록 등의 사고신고 계좌인 경우
 3. 연결하고자 하는 계좌가 아래 지정한 상품이 아닌 경우 또는 그 외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서비스에 연결 가능한 상품)

- 은행 계좌 : 저축예금 또는 달달 하나 통장
 - 타 금융기관 계좌 : 은행계좌와 연계하여 개설한 하나증권 서비스전용 계좌
- ④ 은행은 이용자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실지명의로 아니거나 타인의 실지명의를 이용한 경우
 2. 은행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3.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또는 은행에 상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함으로써 계약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5. 본 약관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①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신청 시 은행 연결계좌와 타 금융기관 연결계좌를 각각 지정하여야 함

니다.

- ② 은행은 매 영업일 오전 4시 이후 기준으로 은행 연결계좌의 잔액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연결된 타 금융기관의 계좌로 자동스윙이체 처리합니다. 단, 처리 도중에 잔액이 변동될 경우 정상적으로 스윙이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은행 연결계좌가 하나은행의 대출원리금 납부계좌 또는 하나카드사의 결제대금 납부계좌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결제일에 결제금액 부족 시 매 영업일 오후 4시 이후 서비스에 연결된 타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연결된 은행계좌로 부족한 자금만큼 역스윙이체를 요청하고, 타 금융기관에서 해당 요청을 확인한 후 이체를 처리합니다. 부족한 자금보다 타 금융기관의 잔액이 작은 경우, 나머지 잔액을 모두 역스윙이체 처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체금액 및 한도

- ① 스윙이체는 은행 연결계좌의 잔액 중 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타 금융기관의 연결계좌로 자동이체하며, 이체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 ② 역스윙이체는 은행 연결계좌에 자동납부 등록된 하나은행의 대출원리금 또는 하나카드의 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타 금융기관의 연결계좌에서 은행 연결계좌로 자동이체하며, 이체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 부족한 금액보다 타 금융기관 연결계좌의 잔액이 적을 경우에는 남은 잔액 전부를 자동이체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시 제한사항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 1. 서비스에 연결불가한 상품으로 전환하는 거래
- 2. 명의변경 또는 양수도 거래

제8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제1~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은행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하나원큐 앱에서 해지 신청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전화, SMS, 이메일,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1.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 안되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제10조 서비스의 종료

- ① 이 서비스는 시행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되고 자동 종료됩니다.
- ② 기존 이용자를 포함하여 종료일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은행은 서비스를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아래 각 호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e메일)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제11조 거래불능 및 면책

- ① 서비스 연결계좌의 부재(계좌해지), 압류·지급정지 및 연결계좌의 이체한도 등으로 인해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자동스윙이체 처리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스윙이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④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13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하나원큐 앱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상관례에 따르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 법령 위반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과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11.1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